

미 연방 정부 셋다운과 정부 부채 한도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BY [BEHNAM DAYANIM](#), [SCOTT M. FLICKER](#), [HAMILTON LOEB](#) & [DEVON WINKLES](#)

지난 10 월 1 일, 미 의회가 내년 예산안 합의를 실패함에 따라서 미 연방 정부는 “셋다운 (폐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미 의회가 이번 달 말까지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게 되면, 미 연방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들 또한 영향권 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의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을 진행 및 조사 중이거나 미국 정부 채권에 투자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다운 사태와 정부 부채 한도의 배경

매년 미 의회는 미 연방 정부의 재량 지출 프로그램 (discretionary spending program)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정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의회는 가끔 새로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전 예산안을 연장하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

지난 10 월 1 일, 미 의회가 새로운 지속 결의안 통과에 실패하고 이전 지속 결의안까지 만료되면서 미 연방 정부는 셋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정부의 재량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국민 연금, Medicare, Medicaid 와 이자 비용 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 정부 지출에 대한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 연방 정부 예산안으로 급여 및 기타 혜택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들 혹은 안보와 재산 보호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 대상 직원”들은 법적으로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직원들은 귀가 조치되었다. 이처럼 귀가 조치된 직원들이 어떠한 정부 기능이라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방정부의 민간인 직원들의 1/3 가량이 귀가 조치되었고 많은 정부 기능들이 중지되었다.

이밖에도 10 월 17 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의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 재무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일부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 한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 연금, Medicare, Medicaid, 국방 관련 급여, 국채 관련 이자, 세금 반납 등의 미 연방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1960 년대부터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78 차례에 걸쳐서 확대하거나, 일시적으로 연장하거나 변경해왔다. 하지만 미 의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에 도달한 상황에서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응급 대책”을 쓸 수 있다. 2012 년 12 월 31 일에 미국은 부채 한도에 도달했는데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실행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10 월 17 일부터 예산이 바닥나서 손발이 묶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리지 않으면, 미 재무부는 10 월 22 일과 11 월 1 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국 내 소송에의 영향

아직까지는 미 연방 법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부는 약 열흘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다고 발표했고, 10 월 15 일 경에 더 자세한 내용의 공지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소송 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 연방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미 법무부는 최근에 연방 검사들에게 인간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민사 소송 관련 업무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연방 검사들은 여러 민사 소송들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소송 연기 신청을 거부하고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그 소송은 첫다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워싱턴 D.C. 법원을 제외하고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들은 첫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정상 운영된다는 것이다.

수출과 라이선스 관련 이슈

또한 첫다운 사태로 인해 수출입 및 미국 내 해외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약 6,000 명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들은 첫다운 기간 중에 귀가조치되었는데, 조사관들은 “예외 대상 직원”으로 간주되어 수입 물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농업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등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기관들은 관련 직원들을 귀가 조치시켰으며 현재 제한된 수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다운 사태가 지속되면 이러한 기관들의 업무가 누적되어 수입 스케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미국에 농업 및 어업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는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조사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라이선스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귀가 조치시켰다. 따라서 산업안전조사국은 국가안보의 이유로 라이선스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라이선스 신청 (export license applications), 상품 분류 요청 (classification requests), 암호화 검토 (encryption reviews), 암호화 등록 (encryption registrations) 및 자문 소견서 신청 (advisory opinion requests) 등의 업무를 더이상 처리할 수 없으며 SNAP-R 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또한 중지된 상태이다. 게다가 산업안전조사국은 최종 결정을 발부하지 않고 있고 이미 처리 중이었던 신청서들 또한 별다른 조치 없이 계류 중이다. (산업안전조사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민감한 제품 (sensitive goods) 혹은 이중 용도 기술 (dual-use technology) 등을 규제하는 연방 기관이다.)

또한 큐바, 이란, 시리아, 수단, 북한 등의 나라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경제 제재 (U.S. sanction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도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방위무역관리국 (Defense Trade Controls)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라이선스 검토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들은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전투 혹은 비상 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라이선스만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품목 관할권 판정 (commodity jurisdiction determination)을 위한 신청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방위무역관리국은 미국 방위물자 리스트 (United States Munitions List)에 포함된 방위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일시적 수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 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업무도 첫다운 기간 동안에 중지됨에 따라 새로운 검토 공지서가 접수되지 않고 이미 검토 중인 거래도 계류중이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거래의 경우, 30일 검토 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45일 조사 기간으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검토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첫다운이 종료되는 대로 재신청하라고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 활동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정부 채권 투자자들이 받는 영향

한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금융 기관들이 미국 연방 정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은 첫다운 사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은 “재량 지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미 의회의 재량 지출 예산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국채 한도가 상향조정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채권 투자자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 재무부가 10월 31일이 마감일인 첫 국채 이자 지급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른 비용 지출보다 이자 지급 실패가 국가 및 세계 경제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 지급 마감일까지 국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 재무부는 미국 국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한해서 디폴트를 방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출에 우선 순위를 매기는 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다. 이자 지급을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11월 15일이 만기일인 두번째 이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국채 한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 없이도 미 대통령이 국채 한도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원 재무 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 의원은 미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악관 홍보 수석인 제이 카니는 최근에 대통령이 국채 한도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오바마 정권이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상기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의 폴헤이스팅스 변호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Seoul

Jong Han Kim
82.2.6321.3801
jonghankim@paulhastings.com

Washington DC

Behnam Dayanim
1.202.551.1737
bdayanim@paulhastings.com

Ellen Walz Holmes
1.202.551.1834
ellenholmes@paulhastings.com

Scott M. Flicker
1.202.551.1726
scottflicker@paulhastings.com

Devon E. Winkles
1.202.551.1851
devonwinkles@paulhastings.com

Hamilton Loeb
1.202.551.1711
hamiltonloeb@paulhastings.com